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19
----------	-----

2025. 4. 30.(수)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봉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라. 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마. 한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한자 교육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2003년 1월 29일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교과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수교과목의 일부를 축소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택교과목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문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음
- 교육부가 2022년 12월에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sup>13)</sup>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교에서의 한자(한문) 관련 방과후수업 편성률은 20%정도 수준임

---

13)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한자(한문) 관련 방과후수업 개설 현황〉

(단위: 교)

지역 (지원청 기준)	대상 학교 수	한자관련 방과후수업 개설 학교 수	편성률(%)
청주	81	30	37.0
충주	30	-	-
제천	19	7	36.8
보은	11	-	0.0
옥천	11	2	18.2
영동	11	1	9.1
진천	13	3	23.1
괴산증평	13	-	-
음성	17	-	-
단양	7	-	-
합계	213	43	20.2

\*출처: 충청북도교육청(국공립 초등학교 중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탑재 학교 기준)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이 선택교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내 중학교 한문교과 편성률은 82% 정도임. 선택과목의 기준 시수는 3년간 170시간으로, 도내 중학교에서의 3년간 한문교과 수업시간 평균은 71.2시간임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문은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에 속해있으며, 해당 교과군은 16학점(특성화고 8학점)을 필수 이수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는 학생의 진로·적성과 수요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편성하므로, 다양한 교과들과 함께 교과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문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 비중이 높지 않음

〈 충청북도 내 중학교 한문교과 편성 현황〉

(단위: 교)

지역 (지원청 기준)	분석 학교 수	한문교과 편성 학교 수	편성률(%)	편성 학교들의 3년간 수업시간 평균
청주	49	42	85.7	72.9
충주	18	13	72.2	81.1
제천	11	10	90.9	56.1
보은	5	5	100.0	74.8
옥천	5	5	100.0	68.0
영동	7	7	100.0	60.7
진천	7	5	71.4	74.8
괴산증평	11	9	81.8	79.3
음성	10	8	80.0	68.0
단양	5	1	20.0	34.0
합계	128	105	82.0	71.2

\*출처: 충청북도교육청(국공립 중학교 중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제출학교 기준)

\*\*수업시간 기준: 1학기에 주당 1시간 수업 편성 시 17시간

- 한편,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일상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33%정도 이고 전문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59%정도에 달하며,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쳐진 경우 등까지 고려하면 일상어와 전문어에서의 한자어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상어와 전문어의 원어 현황〉

구분	일상어		전문어	
	표제어 수	비율(%)	표제어 수	비율(%)
고유어	232,168	47.923	23,773	8.516
한자어	161,143	33.262	167,427	59.974
외래어	6,022	1.243	46,178	16.541
한자어+외래어	3,113	0.643	11,715	4.196
한자어+고유어	79,476	16.405	28,309	10.141
외래어+고유어	1,268	0.262	1,282	0.459
한자어+외래어+고유어	1,274	0.263	481	0.172
계	484,464	100	279,165	100

\*출처: 국립국어원(2023.12.19.)

-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조사’ (2024.9월)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372명)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 고 응답했고, ‘학생 31% 이상의 학생이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고 응답한 교원이 34.4%, 학생 21%~30%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32.7%로 나타남
- 이에,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본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현행 관련법상 한자 교육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며, 본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한자 교육”을 한자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는 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각급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5조는 한자 교육 지원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자가 교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및 선택교과목으로 지정된 중학교 등에서 한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지원은 필요한 조치라 보여지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전문적인 한자 교육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측면에서 적합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6조는 한자 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자 관련 연구기관, 활동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짐

####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문장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하며 학습 능력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문해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음
- 한편, 한자는 우리말의 어휘와 개념 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의 비중 및 중요도가 낮다는 점에서 한자 교육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및 방안을 담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

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4. 교원의 한자 교육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4. 한자 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교육기본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2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 2. 비용 발생 요인

-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비

## 3. 관련조문

- 안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나. 추계 결과

- (기존·확대)한자교육 콘텐츠 개발: 5,600,000원
  - 자료개발비: 5,000,000원
    - 동영상 수업콘텐츠: 100,000원 × 20개 영상 = 2,000,000원
    - 교과서 한자용어 문해력 향상 수업자료: 3,000,000원  
(원고료) 10,000원 × 10매 × 5과목 × 3개 학년 × 2개 학교급(초, 중) = 3,000,000원
  - \*과목예시: 국어, 사회(역사, 도덕), 과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등
  - 협의회: 10,000원 × 20명 × 2회 = 400,000원
  - 용품비: 100,000원 × 2회 = 200,000원
  - \*다채움에 탑재하는 수업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통합 운영
- (기존)문해력 향상 한자 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5,000,000원

- 2,500,000원 × 2개 연구회(초등, 중등) = 5,000,000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구회로 통합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10,600	10,600	10,600	5,000	5,000	41,800
한자교육 콘텐츠 개발		5,600	5,600	5,600	-	-	16,800
교사 연구회 운영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10,600	10,600	10,600	5,000	5,000	41,8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0,600	10,600	10,600	5,000	5,000	41,8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